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의 問題點

金 海 琳*

<都和綜合設計公社代表理事>

序 言

1973. 2. 5. 字로 公布된 技術用役育成法은 其間 國內 技術用役業界의 整備와 育成에 큰 役割을 한 것이 事實이나, 韓國現實에 比추어 一層더 積極的인 政策的 支援이 可能하도록 法 改正이 要望되고 있음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近者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 公布에 따라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은 不得已 改正할 계제에 이르렀으므로, 母法의 改正에 對한 論議에 앞서 同施行令이 內包하고 있는 問題點들에 對한 私見을 提示하여 同法 施行令 改正時에 多少나다 參考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小稿를 作成하는 바이다.

1.

한마디로 技術用役이라 하더라도 技術의 種類에 따라 業務內容이 다르며 現在 法 施行令과 技術의 分類와는 密接한 關聯性이 있으므로 本論에 앞서 現行法上에서 技術의 分類를 如何히 하고 있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技術士法」에서는 技術을 13個部門으로 大別하고 그 部門을 다시 細分하여 總 64個 分野로 하였으며 「技術用役育成法」에서는 技術士法과 大同小異한 內容이나 15個部門, 75個 分野로, 또한 近年 制定된 「國家技術資格法」에서는 前 2法에서 部門에 該當하는 것을 分野로, 分野는 種目으로 改稱하여 19個 分野, 86個 種目으로 分類하고 있다. 部門(資格法에서는 分野)은 例컨대 機械, 金屬, 電氣等은 主로 技術系 大學에서와 같이 學問的 立場에서 分類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產業利用面에서 技術을 區分한다면

※ 技術士 <建設部門>

- a. 製造技術 — [輕工業] 纖維分野, 化工分野(一部), 產業應用分野의 窯業 및 食品製造加工, 水產製造等
- [重工業] 化學分野(一部), 金屬分野, 造船, 航空機
- b. 設備技術 — 機械, 電氣, 電子, 通信
- c. 資源技術 — 鑛業, 에너지
- d. 建設技術(基盤造成技術) — 土木, 建築, 國土開發, 海洋
- e. 其他 — 安全管理, 生産管理, 產業應用分野의 一部, 情報處理

區分名이 適切한 것인지는 모르나 「國家技術資格法」에서 分類한 各技術分野를 以上과 같이 크게 總合하여 區分하는 方法도 있다. 여기에서 產業利用面에서의 分類를 舉論한 까닭은 이 區分에 따라 技術用役業務의 樣相이 若干式 相異하기 때문이다.

技術用役業務의 內容은 「技術用役育成法」第 2條에 計劃, 研究, 設計, 分析, 調查, 購買, 調達, 試驗, 監理, 試運轉, 評價, 諮問, 指導其他라고 多樣하게 定義하고 있어 技術種目的 如何를 不問하고 技術用役業務하면 叙上의 項目中 數個 乃至 全體를 作業內容으로 하고 있다. 前記 技術區分中 a. 製造技術에 屬하는 化工, 纖維等의 技術分野의 用役業務는 育成法 第 2條에 明示된 業務는 거의 網羅되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Know How나 特許를 가지지 아니하면 業이 成立하지 못한다. d의 建設技術 區分에 屬하는 土木 建築業分野의 技術用役業務는 調查, 試驗, 計劃, 設計等이 主業務이며 이에 組織化된 많은 技術力이 所要되며 產業基盤造成에 必要한 技術

分野만큼 a 製造技術區分과 함께 大用役業體의 成立이 可能하다. b의 設備技術에 屬하는 電氣, 機械, 電氣通信 등의 分野는 他區分の 技術과 協同하는 性質의 技術用役業務가 大部分이다. e 其他에 屬하는 安全管理, 生産管理分野는 調査, 分析, 諮問等 簡單한 內容의 業務가 主가 된다.

以上과 같이 技術의 種類에 따라 用役業務의 內容과 作業量이 各各 相異한 것이 現實情이다. 이와같이 技術用役의 業務內容이 技術種類에 따라 特色이 있으나 現下 우리나라 實情에서 要求되는 重要 業務는 重化學工場 및 關聯工業 등의 建立과 産業基盤造成을 爲한 諸般 國土開發等 數多한 Project에 關하여 技術的 經濟的 妥當性의 檢討, Master Plan의 樹立, 施工設計 및 示方의 作成 試運轉의 實施 等이라고 指摘할 수 있으며 이것을 遂行할 수 있는 技術用役業體의 組織化와 育成策을 마련하는 것이 立法의 背景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에 明示되었거나 潛在되어 있는 育成方案의 主要骨子は

1. 國家에서 技術資格을 獲得한 技術士 또는 科技處長官이 技術資格을 認定한 認定技術士의 保有를 登錄의 必須條件으로 함으로써 技術의 向上과 不實技術用役業體의 亂立을 防止한다.

2. 學術技術用役等の 例外를 두었으나 國家나 公共機關이 發注하는 技術用役業務는 原則적으로 登錄된 用役業體가 아니면 受注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企業發展을 期하도록 한다.

3. 外國技術用役業體의 國內技術用役受注를 可能한 限 抑制하여 外貨節約과 技術用役市場을 擴大한다.

4. 技術用役業體의 大型化를 誘導할 수 있도록 政策的으로 配慮하여 大型業體의 育成을 優先한다.

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이 4個項目中 第1 乃至 第3 項은 法條文中에서 直接 認知할 수 있으나 第4 項에 對해서는 關係條文의 趣意를 相互 綜合 分析함으로써 알 수 있다. 即 法 施行令 第3 條(用役業 登錄의 區分)를 두어 技術用役業을 綜合技術用役業, 專門

技術用役業, 個人技術用役業 等の 3種으로 區分하였고 法 施行令 第10條(業務範圍)에서 技術用役業者는 登錄된 當該 技術用役部門 또는 專門分野에 限하여 用役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라고 그 業務範圍를 明示하고 있는 바 이를 解註함에 있어 가령 化工部門의 技術士 免許를 所持한「化學肥料」專攻分野의 技術士인 경우 그가 個人技術用役業에 屬했다면 이 分野의 業務만을 受注할 수 있음에 反하여 그가 專門技術用役業體에 屬하면「無機藥品」,「燃料 및 潤滑油」等 他分野의 業務까지도 擔當할 수 있다는 點을 法 條項 第4 條(登錄基準等)에서 敷衍解釋할 수 있으므로 第10條는 專門用役業體로 하여금 保有한 技術士數 보다 많은 技術分野의 業務를 擔當할 權限을 附與한 條項이다. 또한 綜合技術用役業體는 專門技術用役業體의 複合體인 點에서——法 第3 條——그의 業務分野는 더욱 廣精圍하다. 特히 綜合技術用役業體에 對하여는 같은 第10條 第2 項에서 登錄되지 아니한 專門分野의 業務까지도 受注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

同一한 保有技術士數에 比하여 業務受注分野가 많을수록 企業經營面에서 安易하다는 事實은 當然하며 政府는 以上과 같은 措置로써 大型用役業體의 重點育成을 企圖하고 있음을 窺知할 수 있다.

이러한 現行 技術用役育成方案의 背景이 되고 있는 前述한 4個項目以外에도 用役市場의 擴大, 用役費의 適正化, 用役受注方法의 改善等에 關하여 大擔한 法的考慮가 아쉬운 한便 稅制上의 特惠等이 考慮되어야겠으나 本文에서는 現行法에 있어서 現實的 論理的으로 問題가 되는 事項에 對하여 言及하는 데 그친다.

3.

(A) 技術用役業體의 區分과 名稱에서 오는 問題點

技術用役業體의 名稱을「個人」「專門」「綜合」으로 區分한 까닭에 技術用役 發注者側은 通念上 이같은 區分을 技術用役業體의 階層을 意味하는 것으로 感受하고 있다. 即 個人技術用役業體는 “1人”만으로 營爲하는 業體 또는 會社組織이 아닌 技術用役業體라고 풀이하기 쉬운 反面,

「專門」이라 하면 技術分野나 部門을 莫論하고 한가지 技術을 專門으로 하는 業體 例컨대 道路 送配電, 船舶等を 다룰 수 있는 業體는 專門技術用役業體라고 解釋하는 한便 「綜合」이라 하면 多種의 技術分野를 綜合의으로 다룰 수 있는 業體로 認識하는 傾向이 濃厚하다.

이와같은 名稱 固有의 概念에서 얻는 解釋以外에도 「個人」은 小業體, 「專門」「綜合」은 順次的으로 大業體라는 認識도 따르기 마련이나 實際 現行法을 土台로 한 法的 理念은 그와 全히 相異하다. 「綜合」은 專門業體 3個以上이 複合한 業體이다.

例를 들면 道路, 農工學, 構造, 土質等의 4個 分野로 形成된〔建設 I〕의 專門業體와 地球物理, 生産管理의 2個 分野로 形成된〔應用理學〕의 專門業體 및 通信機械, 電送의 2個 分野로 形成된〔電氣通信〕 專門業體 等 3개의 專門業體가 複合形成되면(技術士數合計 8人) 綜合技術用役業體로 登錄할 수 있는데 如斯한 「綜合」業體로 많은 種類의 業務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나, 綜合的으로 技術用役을 遂行하지는 못한다. 反하여 道路, 河川, 港灣, 都市計劃, 下水道等 建設部門의(專門業體가 될 수 없다) 技術士와 地質, 海洋, 流體機械等 서로 他部門의 技術士計 8人이 構成員이 되고 있는 用役業體는 法的으로는 비록 個人技術用役業體일지라도, 前者 「綜合」業體보다 技術士의 數가 많고 이러한 境遇를 考慮할 때는 「綜合」이 「個人」보다 大型業體라는 觀念은 通할 수 없으며 特히 이 境遇의 「個人」業體가 水資源開發 또는 臨海工業灣建設計劃 等を 다룸에 있어 前者의 「綜合」에 比하여 오히려 綜合的인 作業이 可能하다. 「專門」業體 역시 適正한 名稱도 아니며 階層의 象徵이라 볼 수 없다. 앞에서 例示한 道路, 送配電, 船舶等を 各 專門으로 다루는 業體가 常識的으로는 專門用役業體이나 法的으로는 後者만 專門技術用役業體이고 前 2 者는 個人技術用役業體이다. 또한 道路技術士 4人으로 構成된 業體는 法的으로 「個人」業體에 不過하나 「造船」「船舶鐵裝」等의 2人의 技術士로 形成된 「專門業體」보다 實質的으로 大型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點들을 勘案하여 業體의 區分을 왜 세가지로 區分하였는지를 理

解하기 困難하다. 이들 「綜合」이 아닌 業體는 모두 「專門」으로 統一하여 「綜合」과 「專門」의 두가지로 區分 名稱하였다면 名稱이 갖는 概念은 一致하며 착오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業體의 大型化 政策에 큰 蹉跌도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張皇하게 論述한 理由는 常識과 法的 背理事實을 공연히 指摘코자 함이 아니고 法的 盲點이 技術用役業의 發展에 制動作用을 加할 可能性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具體的으로 말해서 한 用役業體가 同一分野에 多數技術士를 保有하는 事實은 技術發展을 爲해 國家的으로 所望스러운 일임에도 不拘하고 法的으로는 個人技術用役業體이며 階層面에서는 小業體와 같이 誤認케 하는 結果, 「專門」「綜合」業體이면서 受注의 機會를 빼앗기는 事例가 不無하였으니, 技術用役業發展에 支障이있다 함이 決코 架上空論만은 아니다. 熟考하여야 할 問題이다.

(B) 專門技術用役業이 取扱할 技術內容을 法的으로 規制할 必要가 있는가? 또 綜合技術用役業도 3個以上의 專門技術用役業이 集合한 것 이라야 한다고 規定할 것인가?

「法 施行令」第 3 條 第 3 項을 보면 「專門技術用役業」은 別表 2 中 1個部門의 技術用役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2 乃至 10個의 技術分野를 各各 內包하고 있는 16個 技術部門中의 1個部門을 營業種目으로 하는 業體라고 定義하고 있다. 學問的으로 볼 때 한 個의 工業技術은 工學의 原理의 差異에 따라, 또는 技術이 作用하는 對象에 따라 時代와 함께 分化하고 系列化하는 것이 原則이며 第 1 節에서 記述한 技術의 部門, 分野라 함은 이같이 分化 系列化한 技術을 學問的으로 分類해서, 大分類를 部門, 小分類를 分野——但, 技術士法上的 區分名——라 命名한 것이라 解釋된다. 原來 技術用役業이 民間企業으로서 成長할 때 業體가 다루는 技術業務의 種類는 產業社會가 要請하는데 따라 決定되었으며 產業社會가 要請하는 內容에 適應하도록 技術能力을 整備함으로써 技術用役業의 發展을 期할 수 있었다. 一方 企業社會가 要請하는 技術的 內容은 技術의 學問的 分類에 따라 系列化할 수 있는 性質의 것만은 아니다. 技術

用役業體가 技術部門의 全系列을 業務內容으로 한다고 해서 企業의으로 有利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國家技術 發展을 爲하는 方途도 아니다.

따라서 劃一的으로 全技術部門에 亘해 1個部門의 技術用役을 擔當할 수 있는 業體가 專門技術用役業體라고 規定하는 것은 第1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部門마다 技術用役의 性質이 다른 것을 勘案할 때 전혀 無意味한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專門」業體는 保有技術士의 專攻分野 以外の 業務까지도 受注할 수 있게 한 法的 優待 條件 때문에 無意味한 以上으로 페단이 隨伴한다. 綜合技術用役業體의 경우에도 專門技術用役業體 3個以上으로 規定하지 말고 專門部門이나 分野의 選擇은 그들이 綜合技術의 役割을 할 수 있는 限 業體들의 選擇에 맡기고 그 規模를 規制할 必要가 있을 때 技術分野——國家技術資格法에서의 種目——의 數 또는 保有技術士의 數를 規定하는 것이 技術用役實情에 비추어 所望스러운 일이다. 現行과 같은 內容을 法的으로 規制하는 것이 論理上 不當한 點은 앞에서 例示한 바 있는 道路, 河川, 港灣, 都市計劃, 下水道 등을 業務內容으로 하는 技術部門의 5人的 技術士와 地質, 海洋, 流體機械의 分野를 受注할 수 있는 3人的 技術士를 保有하는 業體는 實質的으로 綜合技術用役業體임에도 不拘하고 現行法으로는 個人技術用役業體의 범주를 未免하는 點을 想起할 때 首肯되기도 餘음이 있다.

(C) 技術用役業體의 大型化

技術用役을 政策的으로 育成코자 하는 國家에 있어 業體를 大型化하는 方案을 講究하는 것은 妥當하다 아니할 수 없다. 既히 言及한 바와 같이 法 施行令에 「綜合」「專門」등의 業體區分을 두고 保有技術分野(種目) 以上の 業務擔當을 許容하고 있는데 이것이 現行法에서의 大型化 誘導方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두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大用役業體를 營業種目이 多種目인 者만으로 限定한 點

둘째, 大型化로 誘導하기 爲한 優待策의 內容이다.

大用役業은 需要者가 要求하는 如何한 種類的

課業이라도 이에 酬應하기 爲해 그 技術能力이 多樣함을 要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現實的으로 볼 때 先進工業國의 大用役業體일지라도 數多種類의 責任技術者를 恒時 保有하는 業體는 稀少하며 一般的으로 大業體라 하면 技術種目的 數보다도 有能한 技術者의 人員保有數로 評價하는 것이 常例이다. 受注量이 적은 技術分野(種目)의 專門家를 常勤시킴은 企業的으로 不利하며 그 方面의 技術이 必要할 때에는 他業體의 專門家の 協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育成法이 規定한 것과 같이 專門業體는 指定한 技術部門(分野)에서 2~4種類 以上の 分野(種目), 綜合業體는 3個의 技術部門에서 各各 2~4種類 以上の 分野(種目)가 있어야 한다는 式的 規制는 技術用役 實態에 비추어 甚히 架空的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種目に 대하여는 用役業體의 申請에 맡기고 技術士의 總人員數만을 規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需要者側에서 볼 때는 그가 必要로 하는 技術課題를 技術用役業體에 委任함에 있어 그 技術分野 以外の 專門家の 數 較보다 當該分野에 多數 技術者를 保有하는 業體를 더욱 信任할 것이 아니겠는가, 法이 이같은 種類的 業體를 個人技術用役業體로 規定하고 있는 點은 再考하여야 할 問題이다.

業體의 大型化를 誘導하는 方法으로 法에서 보면 保有技術種目 以外에도 業務를 擔當할 수 있게 許容하고 있다.

即, 個人業體 以外の 業體는 登錄된 專門部門에 限하여 全種目的 技術用役을 擔當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業體의 受注範圍가 커서 企業經營이 有利하게 되며 이같은 利點이 業體의 大型化를 促進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一 方法 施行令의 立法精神의 主要項目的 하나는 國家技術資格을 獲得한 技術士만이 技術用役業務를 擔當할 수 있고, 그것도 免許를 얻은 技術部門의 全分野가 아니라, 專攻分野만에 限定시켜 技術用役의 質的 保障을 期하고자 한 것인데, 大用役業體를 優待하기 爲해서 이같은 主要한 立法精神에 違背된 措置를 取하고 있다. 技術士는 專攻分野 以外에는 擔當能力이 없겠느냐 하는 現實問題와는 別途로 技術用役業育成의 目

標가 國內 技術能力 向上이며 이에 符合토록 技術士 業務範圍를 限定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所屬된 「業體」 區分에 따라 技術士의 業務能力이 相異하게 待遇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만 法에서 分類한 75個 技術種目 가운데는 適用되는 工業的 原理와 技法이 相互 類似한 것이 있다. 例컨대 道路와 鐵道, 紡糸와 紡織, 計測 制御와 電氣通信業이다. 그러므로 굳이 優待措 置를 業務範圍에 擴大코저 한다면 그와 같은 類 似種目に 限하여만 許容토록 하는 方案이 있으 나 가장 適切한 것은 稅制上의 優待같은 것이 所望스러운 것이다.

(D) 認定技術士問題

法 施行令 第4條 第3項 「……登錄基準은 技術士法에 依한 技術士 또는 다음 各號의 者中에 서 技術士와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科學技術處 長官이 認定하는 者(以下 “認定技術士”라 한다) 로 한다」라 한 條項은 施行令 制定 當時 相當한 物議를 일으켰든 것으로 記憶한다. 그 까닭은 認定技術士의 技術能力을 全的으로 下視해서 그 런 것이 아니며 또한 技術士가 輩出되지 아니한 分野에 對한 不得已한 措處일을 理解하지 못하 여서가 아니라 過去 建設技術用役業分野에서 建設部가 主管이 되어 業體登錄을 實施할 때 都市

計劃分野에 限하여 그같은 認定技術士制度를 用한 結果, 過多한 業體가 登錄하여 用役業 秩序를 紊亂케 한 事 經驗이 있었기 때문이다. 當局도 用役界의 物議를 參酌해서 前記條項에 但書를 두어 「다만 建設部門의 專門分野는 技術士에 限한다」하는 條文을 挿入하였다. 여기서는 認定技術士를 法 經過措置로서 取扱하지 아니할 點을 指摘하고 싶다. 施行令 制定當時에 既히 公布된 技術士法에서는 技術士의 優待에 關한 規定하였고 이것이 強制規定은 아니라 하더라도 認定技術士와 技術士를 登錄要件에서 同格으로 다룬 것은 두가지 法이 같은 主務官廳이라는 點에서 矛盾된 處事라 할 수 있다.

1973. 12. 31 公布된 國家技術資格法 第10條(技術資格 取得者에 對한 優待)에는 ②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依한 技術分野에 關한 營業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許可 또는 認可하거나 權利의 設定 其他 利益을 賦與 하는 때에는 當該 技術分野의 技術資格取得者를 優先的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法의 精神을 遵守하자면 登錄基準에서 技術士와 認定 技術士를 同格으로 看做하지 못할 것이다.

現在 技術士의 輩出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科學技術部門別 年度別 技術士合格者統計表 (1974末現在)

과학기술부문	년	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계			415	67	47	22	28	22	27	32	26	26	48	70
1. 농업	부	문	50	7	5	3	3	3	4	5	3	2	4	11
2. 수산	부	문	6	—	—	—	—	1	—	—	1	—	3	1
3. 임업	부	문	1	—	—	—	—	—	—	—	—	—	1	—
4. 전기	부	문	40	15	2	2	5	3	1	3	1	1	1	6
5. 기계	부	문	36	7	8	4	1	2	1	—	—	2	5	6
6. 화학	부	문	33	2	1	2	4	2	3	3	1	1	8	6
7. 섬유	부	문	24	7	3	3	3	2	1	2	1	—	2	—
8. 금속	부	문	17	2	—	1	1	—	3	3	3	1	3	—
9. 광업	부	문	19	4	—	—	2	—	—	3	1	2	3	4
10. 선박	부	문	11	—	—	2	1	1	—	—	—	1	2	4
11. 항공기	부	문	3	2	1	—	—	—	—	—	—	—	—	—
12. 건설	부	문	145	20	26	4	8	7	11	9	13	14	11	22
13. 응용이학	부	문	30	1	1	1	—	1	3	4	2	2	5	10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野別로는 技術用 役需要에 비해 크게 不足한 狀態가 아니나, 種 目別로는 多少 不足한 듯 함으로 그러한 分野에 서는 種目別 技術資格단을 認定하는 것을 原則으 로 하는 從前立場을 修正해서 同一分野의 技術士 까지 擴大하거나 그 分野에서 不足하면 兼職을 許 容하는 方法等을 採用 技術士 保有를 必須登錄 條件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既히 登錄된 業體에 限하여 一定期間 認定技術士도 許容하도록 措置 함이 바람직하다.

4.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 改正時 反映될 수 있 게 叙上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i) 技術用役業體의 區分은 個人技術用役業體 를 削除하고 綜合技術用役業體와 專門技術用役 業體의 두가지로 한다.

(ii) 業務範圍 即 技術分野와 種目は 技術用 役業體의 申請에 맡기되 「綜合技術用役業體」는

所定數以上の 種目を 包含한 主專門分野 1個 以 上, 主專門分野를 包含하여 所定種目數以上, 總 技術士의 所定數以上이라고 規定하는 한便 「專 門技術用役業體」는 「綜合」業體의 登錄基準에 未 達하는 技術種目數와 技術士數를 保有하는 者라 고 定義한다. 또한 種目數와 技術士는 一致하지 아니하여도 可하며 業體規模는 主로 技術士數의 多少로 判斷한다.

(iii) 技術用役業體의 大型化를 誘導하기 爲하 여 業體가 保有하는 技術士數에 比例하는 業務 種目數의 擴大 營業을 許容하되 保有技術士가 取得한 技術種目과 類似한 種目に 限定케 하고 類似種目は 事전에 法으로 制定토록 한다.

(iv) 認定技術士를 法主條文中에서 削除하고 經 過措置에 包含시키게 하는 한便 技術士의 輩出 이 不足한 種目は 그것이 屬한 技術分野의 他種 目 技術士로 代置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 輩出이 不足한 分野에 限하여 他職場 技術士의 兼職도 許容토록 한다. (1975. 4. 23 稿)

寄稿歡迎

本誌의 內容을 더욱 充實하게 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會員 및 讀者 諸位의 寄稿를 歡迎합니다.

- 1)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고 題目과 姓名은 國漢文 및 英文으로 記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 筆者의 寫眞一枚와 本文 記事와 關係있는 寫眞 및 圖解를 添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採擇된 原稿에 對해서는 所定の 稿料를 드리겠습니다.
- 4) 提出期間: 隨時로 接受함
- 5) 보내실곳: 韓國 技術士會事務局編輯室

서울特別市 中區 明洞 2街 2의7

電話 (76) 1265 (76) 1866